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의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충청남도는 모델 3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4,217,000	144,524	3

▶ 2015년 일반회계 당초예산 기준

❖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운영계획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위원회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지원 기타 부칙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 2015년 부서별 주민참여예산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건수	예산반영액	비고
총액	1,285건	144,524	
홍보협력관실	33건	7,467	
여성가족정책관실	47건	7,109	
기획조정실	44건	2,053	
경제산업실	108건	7,467	
안전자치행정국	214건	19,772	
문화체육관광국	100건	11,313	
농정국	123건	27,523	
복지보건국	218건	29,975	
환경녹지국	87건	6,181	
건설교통국	68건	7,066	
해양수산국	70건	5,444	
소방본부	22건	3,411	
농업기술원	128건	6,631	
공무원교육원	14건	2,608	
보건환경연구원	9건	506	